

제2461호
2016. 07. 27.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편집인: 공 보 실 장 장 운 기
 전화: 3396-496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 관 의 장
람	

구 보

- 규 칙
 제673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2
- 공 고
 제2016-503호: 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2016-504호: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제2016-509호: 서울특별시중구 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1
 제2016-510호: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공시송달 및 강제처분(폐차) 공고 31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65 / FAX.(02)3396-9024
 ● 구보는 수시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												
람												



규	칙
---	---

●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673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7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최 창 식 (인)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673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 현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규정 (제2조 관련)

기관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총 계	1,211	867	25	103	216
정무직 계	1	1			
구 청 장	1	1			
일반직 계	1,203	863	21	103	216
3급 소계	1	1			
행정	1	1			
4급 소계	6	5		1	
서기관	3	3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2			
기술서기관(보건.의무)	1			1	
5급 소계	57	30	1	11	15
행정	36	21	1		14
시설(토목1, 건축1, 지적1)	3	3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2			2	
행정.시설	4	4			
의무.약무	1			1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1			1	
의무	7			7	
6급 소계	230	171	3	20	36
행정	151	109	3	8	31
세무	14	14			
사회복지	6	4			2
전산	1	1			
방호	1	1			
공업(기계2, 전기2, 화공1)	5	5			
녹지	3	3			
의료기술	1			1	
약무	2			2	
간호	5			5	
환경	1	1			
시설(토목6, 건축6, 지적3, 디자인1)	16	16			
시설(토목.건축)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행정4, 토목1, 건축1)	6	6			
보건.의료기술	1			1	
공업(화공).보건.환경	1	1			
보건진료	3			3	
위생	1	1			
운전	3	3			
전기운영(전기)	1	1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7급 소계		366	276	9	30	51
행정		213	155	6	8	44
세무		21	21			
사회복지		15	7		1	7
전산		4	4			
속기		3		3		
방호		6	6			
공업(기계5, 전기4, 화공3)		12	12			
녹지		3	3			
수의		1	1			
보건		7	3		4	
식품위생		1			1	
의료기술		5			5	
환경		1	1			
약무		2			2	
간호		9			9	
시설(토목14, 건축12, 지적6, 디자인1, 도시계획1, 교통시설2)		36	36			
방송통신		1	1			
위생		3	3			
시설관리		9	9			
운전		8	8			
전기운영(전기)		3	3			
기계운영(기계1)		1	1			
농림운영(원예)		2	2			
8급 소계		345	256	2	28	59
행정		190	139	2	5	44
세무		32	32			
사회복지		19	6			13
전산		7	7			
방호		2	2			
공업(기계4, 전기5, 화공1)		10	10			
녹지		5	5			
보건		5			5	
의료기술		5			5	
간호		13			13	
환경		2	2			
시설(토목18, 건축10, 지적6, 교통시설1)		35	35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2	2			
위생		0	0			
시설관리		4	4			
운전		6	6			
전기운영(전기)		3	3			
기계운영(기계)		1	1			
사무운영(워드3)		3	1			2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동
9급 소계		196	122	6	13	55
행정		51	21	2		28
세무		9	9			
사회복지		14	11			3
전산		2	1		1	
방호		10	9	1		
공업(기계5, 전기9)		14	13	1		
녹지		2	2			
보건		2			2	
의료기술		2			2	
환경		1	1			
식품위생		1			1	
시설(토목7, 건축3, 지적4)		14	14			
방송통신		1	1			
위생		4	4			
운전		44	21	2	6	15
전기운영(전기)		5	5			
기계운영(기계)		3	2			1
사무운영(워드)		17	8		1	8
전문경력관 소계		2	2			
나군		2	2			
화생방담당		2	2			
별정직 계		7	3	4		
5급상당 소계		3	1	2		
비서		1	1			
전문위원		2		2		
6급상당 소계		1	1			
비서		1	1			
7급상당 소계		3	1	2		
비서		3	1	2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규정 (제2조관련)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별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규정 (제2조관련)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총 계		1,211	867	25	103	216	총 계		1,211	867	25	103	216
정무직 계		1	1				정무직 계		1	1			
구 청 장		1	1				구 청 장		1	1			
일반직 계		1,203	863	21	103	216	일반직 계		1,203	863	21	103	216
3급 소계		1	1				3급 소계		1	1			
행정		1	1				행정		1	1			
4급 소계		6	5		1		4급 소계		6	5		1	
서기관		3	3				서기관		3	3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2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2			
기술서기관(보건·의무)		1			1		기술서기관(보건·의무)		1			1	
5급 소계		57	30	1	11	15	5급 소계		57	30	1	11	15
행정		36	21	1		14	행정		36	21	1		14
시설(토목1, 건축1, 지적1)		3	3				시설(토목1, 건축1, 지적1)		3	3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녹지		1	1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2			2		행정·보건		2			2	
행정·시설		4	4				행정·시설		4	4			
의무·약무		1			1		의무·약무		1			1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의무·간호		1			1	
의무		7			7		의무		7			7	
6급 소계		230	171	3	20	36	6급 소계		230	171	3	20	36
행정		151	109	3	8	31	행정		151	109	3	8	31
세무		14	14				세무		14	14			
사회복지		6	4			2	사회복지		6	4			2
전산		1	1				전산		1	1			
방호		1	1				방호		1	1			
공업(기계2, 전기2, 화공1)		5	5				공업(기계2, 전기2, 화공1)		5	5			
녹지		3	3				녹지		3	3			
의료기술		1			1		의료기술		1			1	
약무		2			2		약무		2			2	
간호		5			5		간호		5			5	
환경		1	1				환경		1	1			
시설(토목6, 건축6, 지적3, 디자인1)		16	16				시설(토목6, 건축6, 지적3, 디자인1)		16	16			
시설(토목·건축)		1	1				시설(토목·건축)		1	1			
행정·세무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보건		1	1				행정·보건		1	1			
행정·시설(행정4, 토목1, 건축1)		6	6				행정·시설(행정4, 토목1, 건축1)		6	6			
보건·의료기술		1			1		보건·의료기술		1			1	
공업(화공)·보건·환경		1	1				공업(화공)·보건·환경		1	1			
보건진료		3			3		보건진료		3			3	
위생		1	1				위생		1	1			
운전		3	3				운전		3	3			
전기운영(전기)		1	1				전기운영(전기)		1	1			

현행

개정안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7급 소개		366	276	9	30	51
행정		213	154	6	9	44
세무		21	21			
사회복지		15	7		1	7
전산		4	4			
속기		3		3		
방호		6	6			
공업(기계5, 전기4, 화공3)		12	12			
녹지		3	3			
수의		1	1			
보건		7	3		4	
식품위생		1	1			
의료기술		5			5	
환경		1	1			
약무		2			2	
간호		9			9	
시설(토목14, 건축12, 지적6, 디자인1, 도시계획1, 교통시설2)		36	36			
방송통신		1	1			
위생		3	3			
시설관리		9	9			
운전		8	8			
전기운영(전기)		3	3			
기계운영(기계1)		1	1			
농림운영(원예)		2	2			
8급 소개		345	256	2	28	59
행정		190	136	2	5	47
세무		32	32			
사회복지		15	6			9
전산		7	6			1
방호		4	4			
공업(기계4, 전기5, 화공1)		10	10			
녹지		5	5			
보건		5			5	
의료기술		5			5	
간호		13			13	
환경		2	2			
시설(토목18, 건축10, 지적6, 교통시설1)		35	35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2	2			
위생		1	1			
시설관리		5	5			
운전		6	6			
전기운영(전기)		3	3			
기계운영(기계)		1	1			
사무운영(워드3)		3	1			2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 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7급 소개		366	276	9	30	51
행정		213	155	6	8	44
세무		21	21			
사회복지		15	7		1	7
전산		4	4			
속기		3		3		
방호		6	6			
공업(기계5, 전기4, 화공3)		12	12			
녹지		3	3			
수의		1	1			
보건		7	3		4	
식품위생		1	+		1	
의료기술		5			5	
환경		1	1			
약무		2			2	
간호		9			9	
시설(토목14, 건축12, 지적6, 디자인1, 도시계획1, 교통시설2)		36	36			
방송통신		1	1			
위생		3	3			
시설관리		9	9			
운전		8	8			
전기운영(전기)		3	3			
기계운영(기계1)		1	1			
농림운영(원예)		2	2			
8급 소개		345	256	2	28	59
행정		190	139	2	5	44
세무		32	32			
사회복지		19	6		13	
전산		7	7		0	
방호		2	2			
공업(기계4, 전기5, 화공1)		10	10			
녹지		5	5			
보건		5			5	
의료기술		5			5	
간호		13			13	
환경		2	2			
시설(토목18, 건축10, 지적6, 교통시설1)		35	35			
방재안전		1	1			
방송통신		2	2			
위생		0	0			
시설관리		4	4			
운전		6	6			
전기운영(전기)		3	3			
기계운영(기계)		1	1			
사무운영(워드3)		3	1			2

현행							개정안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직렬별	기관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9급 소계		196	122	6	13	55	9급 소계		196	122	6	13	55
행정		51	21	2		28	행정		51	21	2		28
세무		9	9				세무		9	9			
사회복지		14	11			3	사회복지		14	11			3
전산		2	1		1		전산		2	1		1	
방호		10	9	1			방호		10	9	1		
공업(기계5, 전기9)		14	13	1			공업(기계5, 전기9)		14	13	1		
녹지		2	2				녹지		2	2			
보건		2			2		보건		2			2	
의료기술		2			2		의료기술		2			2	
환경		1	1				환경		1	1			
식품위생		1			1		식품위생		1			1	
시설(토목7, 건축3, 지적4)		14	14				시설(토목7, 건축3, 지적4)		14	14			
방송통신		1	1				방송통신		1	1			
위생		4	4				위생		4	4			
운전		44	21	2	6	15	운전		44	21	2	6	15
전기운영(전기)		5	5				전기운영(전기)		5	5			
기계운영(기계)		3	2			1	기계운영(기계)		3	2			1
사무운영(워드)		17	8		1	8	사무운영(워드)		17	8		1	8
전문경력관 소계		2	2				전문경력관 소계		2	2			
나군		2	2				나군		2	2			
화생방담당		2	2				화생방담당		2	2			
별정직 계		7	3	4			별정직 계		7	3	4		
5급상당 소계		3	1	2			5급상당 소계		3	1	2		
비서		1	1				비서		1	1			
전문위원		2		2			전문위원		2		2		
6급상당 소계		1	1				6급상당 소계		1	1			
비서		1	1				비서		1	1			
7급상당 소계		3	1	2			7급상당 소계		3	1	2		
비서		3	1	2			비서		3	1	2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 가. 복지서비스 현장성 강화 등 복지 분야 기능강화를 위한 인력확충을 위해 사회적
정원 확보
- 나.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기능 감소직렬 정원 감축

2. 주요내용

- 가. 사회복지직 정원 증원 : 4명
○ 사회복지직 신규임용을 위해 8급 정원 4명 증원
-〔현행〕사회복지 8급 15명 → 〔변경〕사회복지 8급 19명
- 나. 기능감소 직렬 정원 감축 : 4명
○ 현장근무 직렬 퇴직결원 정비 등을 통한 정원 감원
-〔현행〕 방호 21명, 사역 9명, 시설관리 14명
-〔변경〕 방호 19명, 사역 8명, 시설관리 13명

직렬별 정원 조정내역

감 축				감 축			
직렬·직급	정 원			직렬·직급	정 원		
	현 행	개 정	증 감		현 행	개 정	증 감
계			△ 4	계			+4
방호(경비) 8급	4	2	△ 2	사 회 복 지 8 급	15	19	+4
위생(사역) 8급	1	0	△ 1				
시설관리 8급	5	4	△ 1				

☞ 직렬 간 정원 상계조정을 통한 필요인력 정원 증원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6-503호

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7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우리구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지방규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위원의 심의자격 기준 등에 대한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우리구 실정에 맞게 조례 개정하여 자치법규에 내재된 부패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위원의 구성 및 해촉 규정 추가
(안 제3조 제3항 및 제4조 제2항)
- 내재된 부패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안 제4조의2)

3. 의견제출

-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토지관리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문의전화:3396-5935, FAX:3396-8812, 메일:haera0204@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 : 1. 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구성)

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국장, 도시관리국장, 재무과장, 도심재생과장
2. 지방세무서 평가담당공무원
3. 감정평가사
4. 금융기관의 임직원
5. 부동산 중개업자
6. 세무사, 공인회계사
7. 대학에서 토지 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8.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9. 그 밖에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정통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②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때

5.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때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구성) ①(생략) ②(생략) 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생략) 6. (생략) 7. (생략) 8. 그 밖에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정통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u>9. <신설></u>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생략) ②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3조(구성) ①(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③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 <u>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u> 9. 그 밖에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정통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현행과 같음) ②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생략)	3. (현행과 같음)
4. <신설>	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때
5. <신설>	5. 제4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때
6. <신설>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생략)	③(현행과 같음)
제4조의2 <신설>	제4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 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6-504호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6년 7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우리구 도로명주소 등에 관하여 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지방규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위원의 심의자격 기준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의 개정사항 등을 우리구 실정에 맞게 조례 개정하여 자치법규에 내재된 부패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등의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규정 개정
(안 제8조 제1항)
- 도로명주소안내판 등을 이용한 광고의 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규정 개정
(안 제20조 제1항)
- 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위원의 해촉 규정 추가
(안 제25조 제2항)
- 내재된 부패발생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신설
(안 제25조의2)

3. 의견제출

-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토지관리과장, 주소: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예관동), 문의전화:3396-5943, FAX:3396-8814, 메일:ihong71@junggu.seoul.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첨부 1.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구청장은 선정한 광고사업자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규칙 제15조 제6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②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u>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u>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생략) ③(생략) 제20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구청장은 <u>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u>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생략) ③(생략) 제2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생략) ②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u>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u>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제8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 ①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교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시기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u>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u>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제20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구청장은 <u>선정한 광고사업자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행규칙 제15조 제6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u>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현행과 같음) ③(현행과 같음) 제2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현행과 같음) ②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u>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u>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신설> 5. <신설> ③(생략) 제25조의2 <신설>	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③(현행과 같음) 제2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	--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6-509호

「서울특별시중구 사무위임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2016년 7월 2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울특별시중구 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2016.7.13. 사무위임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사무위임규칙 일부 개정
- 법 개정에 따른 일부 업무 신설 및 삭제

2. 주요내용

구분	사무명	변경 사유
신설	○ 응급환자 이송에 관한 사무 ○ 마약류취급자 관련 사무 일부(과태료부과징수) ○ 의료법인 관련 사무 일부(부대사업 신고 등)	○ 사무명 추가
삭제	○ 응급의료에 관한 사무 ○ 구급차를 운용하는 자에 관한 사무 ○ 세탁물처리업자에 관한 사무 ○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사무	○ 법령상 시도지사 업무에서 시군구청장 업무로 권한변경되어 사무위임규칙에서 사무위임조례로 이동
	○ 의료보수신고 ○ 의료법인 청산종결의 신고에 관한 사무 ○ 노인전문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 ○ 기생충 예방을 위한 수거 ○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법개정에 따른 삭제> ○ 의료기관에서 “진료비용 고지”로 전환 ○ ‘민법’과 내용 중복으로 삭제 ○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일원화 ○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수행 ○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은 보건소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실시로 변경
기타	○ 법제명 변경(전염병 예방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 법 개정에 따른 관련 법조항 변경	

3. 개정 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 8. 16.(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참조 : 기획예산과장, 서울특별시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예관동) 전화: 02-3396-4903, FAX 02-3396-8665, bdss5@junggu.seoul.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 하실 분은 중구청 기획예산과
(02-3396-4903)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서울특별시중구 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중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위 입 사 무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수임기관
1. 장애인 진단사항 확인 및 장애인등록증 발급 업무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9조 제1항 ○ 동법시행규칙 제3조, 제4조, 제8조	동장
2.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제조에 관한 사무 가. 제제 제조신고·제조 업무변경 및 폐지의 신고 수리 나. 보고와 검사 등 다. 폐기명령 등 라. 검사명령 마. 개수명령 바. 업무의 정지명령 등 사. 과징금의 부과·징수 아. 과태료의 부과·징수	○ 「약사법」 제41조제1항 단서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2조제1항 단서 ○ 같은 법 제69조 ○ 같은 법 제71조 ○ 같은 법 제73조 ○ 같은 법 제74조 ○ 같은 법 제76조 ○ 같은 법 제81조 ○ 같은 법 제98조	보건소장
3.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 의료법 제33조제4항 및 제5항	보건소장
4. 의료기관개설 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 의료법 제35조제1항 단서	보건소장
5. 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나. 휴업·재개업·폐업신고 수리 다. 영업정지명령·허가취소 및 시정명령과 이에 따르는 청문 라. 서류제출 및 검사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8조 ○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 같은 법 제58조, 제59조, 제75조 ○ 같은 법 제57조	보건소장
6. 감염병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설치 나. 감염병의 예방조치 다.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라.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마. 예방접종증명서 교부 바. 예방접종의 위탁	○ 감염병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3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29조, 제30조 ○ 같은 법 제49조 ○ 같은 법 제42조 ○ 같은 법 제24조, 제25조 ○ 같은 법 제27조 ○ 같은 법 제24조, 같은법 시행령 제20조	보건소장
7. 마약류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 나. 마약류취급자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및 변경 다. 폐업 등의 신고수리 라.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 발행·교부 마. 사고마약류의 처리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 같은 법 제7조 ○ 같은 법 제8조 ○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보건소장

2461호 33-25 사 무 명	근 거 법 령	2016. 07. 27. 수임기관
바.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대한 승인 사. 마약류의 도소매의 판매에 관한 보고서 수리 아. 출입·검사와 수거 자. 마약류의 폐기명령 및 업무보고 명령 차. 허가 등 취소와 업무보고 명령 카. 청문의 실시 타. 과징금 부과 및 징수 파.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교육실시 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제23조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제27조, 제29조 ○ 같은 법 제41조 ○ 같은 법 제42조, 제43조 ○ 같은 법 제44조 ○ 같은 법 제45조 ○ 같은 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같은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 같은 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8.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 및 등록변경 나. 시정명령 다. 과태료	○ 의료법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조 ○ 같은 법 제63조 ○ 같은 법 제87조	보건의료정책관
9. 의료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나. 정관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다.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무 라. 설립등기의 보고에 관한 사무 마. 임원선임의 보고에 관한 사무 바. 재산의 증가보고에 관한 사무 사. 법인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무 아.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자.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무 차. 의료법인 설립허가취소에 관한 사무 카. 부대사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 「의료법」 제4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9조 ○ 같은 법 제4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 같은 법 제4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 ○ 같은 법 제51조 ○ 같은 법 제49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제61조	보건의료정책관
10. 응급환자 이송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나. 변경허가 다. 변경신고 라. 휴·폐업, 재개업 신고 마. 지위승계 신고 바.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 같은 법 제51조제3항 ○ 같은 법 제51조제4항 ○ 같은 법 제53조 ○ 같은 법 제54조 ○ 같은 법 제62조제2항	보건의료정책관

현행			개정안		
<별표> 위임사무			<별표> 위임사무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4.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제조에 관한 사무 가. 제제 제조신고·제조 업무변경 및 폐지의 신고 수리 나. 보고와 검사 등 다. 폐기명령 등 라. 검사명령 마. 개수명령 바. 업무의 정지명령 등 사. 과징금 처분 아. 과태료의 부과 . 징수	○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 약사법 제33조 ○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 동법 제64조 ○ 동법 제65조 ○ 동법 제66조 ○ 동법 제67조 ○ 동법 제69조 ○ 동법 제71조의3 ○ 동법 제79조	보건소장	2. 의료기관 조제실 제제 제조에 관한 사무 가. 제제 제조신고·제조 업무변경 및 폐지의 신고 수리 나. 보고와 검사 등 다. 폐기명령 등 라. 검사명령 마. 개수명령 바. 업무의 정지명령 등 사. 과징금의 부과 . 징수 아. 과태료의 부과 . 징수	○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 「약사법」 제41조제1항 단서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1항 단서 ○ 같은 법 제69조 ○ 같은 법 제71조 ○ 같은 법 제73조 ○ 같은 법 제74조 ○ 같은 법 제76조 ○ 같은 법 제81조 ○ 같은 법 제98조	보건소장
5. 의약품 판매업에 관한 다음 사무 가. 의약품 판매업 허가 및 변경사항 허가 나. 의약품 도매상 관리 약사 승인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업무개시명령 등 마. 폐기명령 등 바. 개수명령 사.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과 이에 따르는 청문 아. 허가증 등의 갱신 자. 허가증 등의 재교부 차.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 약사법 제35조 ○ 동법 제37조제3항 ○ 동법시행규칙 제38조 ○ 동법 제64조 ○ 동법 제64조의 2 ○ 동법 제65조 ○ 동법 제67조 ○ 동법 제69조 제69조의 2 ○ 동법 제71조의2 ○ 동법 시행규칙 제93조 ○ 동법 제71조의3 ○ 동법 제79조	보건소장	<삭 제> <삭 제>		
6. 삭제 (2002. 12. 24) 7. 삭제 (2002. 12. 24) 8.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치과 의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나. 휴업·폐업의 신고 다. 보고와 업무검사 등 라. 시정명령·영업정지명령·개설·허가취소 및 폐쇄 명령과 이에 관한 청문	○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의료법 제30조제4항 및 제6항 ○동법 제33조 ○동법 제49조 ○동법 제50조 제51조 제63조의 2	보건소장	3.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치과 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삭 제> <삭 제> <삭 제>	○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 의료법 제33조제4항 및제5항	보건소장
9. 의료기관개설 특례에 의한 부속의료 기관 개설허가	○서울특별시행정권한 위임조례 ○의료법 제31조제1항 단서	보건소장	4. 의료기관개설 특례에 의한 부속의료기관 개설허가	○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 ○의료법 제35조제1항단서	보건소장

현행			개정안		
<별표> 위임사무			<별표> 위임사무		
<u>10. 세탁물처리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u> 가. 신고 나. 업무정지명령 및 지도 감독	<u>○서울특별시행정권한 위임조례</u> <u>○의료법 제64조</u> <u>○의료법 제17조</u> <u>○의료기관세탁물관리 규칙 제7조</u> <u>○의료법 제17조</u> <u>○의료기관세탁물관리 규칙 제16조</u>	<u>보건소장</u>	<u><삭 제></u>		
<u>11.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사무</u> 가. 당직 의료기관의 지정 나. 구급차 등의 운용에 따른 지도 감독	<u>○서울특별시행정권한 위임조례</u> <u>○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2조</u> <u>○동법 제39조</u>	<u>보건소장</u>	<u><삭 제></u>		
<u>12.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7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 규정에 각각 해당하는 의료기관 또는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 대한 다음의 행정 처분</u> 가. 개설 또는 영업허가의 취소, 업무 정지 및 폐쇄명령(단, 폐쇄명령은 신고의 경우에 한함) 나. 청문 다.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	<u>○서울특별시행정권한 위임조례</u> <u>○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7조제2항</u> <u>○동법 제48조</u> <u>○동법 제49조</u> <u>○동법 제60조</u>	<u>보건소장</u>	<u><삭 제></u>		
<u>13. 소독업무에 관한 다음의 사무</u> 가. 허가 및 변경허가 나. 휴업, 재개업, 폐업신고 수리 다. 영업정지명령, 허가취소 및 시정명령과 이에 따르는 청문 라. 소독실적 보고	<u>○서울특별시행정권한 위임조례</u> <u>○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3</u> <u>○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4</u> <u>○ 동법 제40조의4</u> <u>○ 동법 제40조의8 및 제40조의9</u> <u>○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7</u>	<u>보건소장</u>	<u>5. 소독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u> 가.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 나. 휴업, 재개업, 폐업신고 수리 다. 영업정지명령, 허가취소 및 시정 명령과 이에 따르는 청문 라. 서류제출 및 검사 등	<u>○서울특별시행정권한 위임조례</u> <u>○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37조, 38조</u> <u>○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39조</u> <u>○ 같은 법 제58조, 59조, 75조</u> <u>○ 같은 법 제57조</u>	
<u>14. 전염병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무</u> 가. 제1종 전염병 예방시설의 설치 나. 제1종 전염병 예방조치 다. 제1종 전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라. 공시립 의료기관의 대응 마. 예방접종약품 등의 용도변경 또는 폐기처분	<u>○ 서울특별시행정권한 위임조례</u> <u>○ 전염병예방법 제23조</u> <u>○ 동법 제39조</u> <u>○ 동법 제42조</u> <u>○ 동법 제25조</u> <u>○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2</u>	<u>보건소장</u>	<u>6. 감염병예방에 관한 다음의 사무</u> 가. 감염병관리기관의 지정, 설치 나. 감염병의 예방조치 다.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u><삭 제></u> <u><삭 제></u> 라.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마. 예방접종증명서 교부 바. 예방접종업무의 위탁	<u>○ 서울특별시행정권한 위임조례</u> <u>○감염병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37조, 같은 법시행규칙 제28조, 29조, 30조</u> <u>○ 같은 법 제49조</u> <u>○ 같은 법 제42조</u> <u>○ 같은 법 제24조, 25조</u> <u>○ 같은 법 제27조</u> <u>○ 같은 법 제24조</u> <u>같은 법 시행령 제20조</u>	

현행			개정안		
<별표> 위임사무			<별표> 위임사무		
15. 기생충 예방을 위한 수거	○ 서울특별시행정안전위원회 위임조례 ○ 기생충예방법 제4조	보건소장	<삭 제>		
16. 건강진단 의료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 서울특별시행정안전위원회 위임조례 ○ 위생분야중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제7조	보건소장	<삭 제>		
17. 마약류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 나. 마약류취급자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및 변경 다. 폐업 등의 신고수리 라.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 발행 . 교부 마. 사고마약류의 <u>사유보고 접수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u> 바.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대한 승인 사. 마약류의 도소매의 판매에 관한 보고서 수리 아. 출입, 검사와 수거 자. 마약류의 폐기명령 및 업무보고 명령 차. 허가 등 취소와 업무보고 명령 카. 청문의 실시 타. 과징금 부과 및 징수 파.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교육실시 <신 설>	○ 서울특별시행정안전위원회 위임조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 동법 제7조 ○ 동법 제8조 ○ 동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 동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 ○ 동법 제13조 ○ 동법 제27조, 제29조 ○ 동법 제41조 ○ 동법 제42조, 제43조 ○ 동법 제44조 ○ 동법 제45조 ○ 동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 동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보건소장	7. 마약류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마약류관리자의 지정 및 변경 나. 마약류취급자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및 변경 다. 폐업 등의 신고수리 라.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 발행 . 교부 마. 사고마약류의 <u>처리</u> 바.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대한 승인 사. 마약류의 도소매의 판매에 관한 보고서 수리 아. 출입, 검사와 수거 자. 마약류의 폐기명령 및 업무보고 명령 차. 허가 등 취소와 업무보고 명령 카. 청문의 실시 타. 과징금 부과 및 징수 파.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교육실시 <u>하. 과태료 부과 및 징수</u>	○ 서울특별시행정안전위원회 위임조례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조 ○ 같은 법 제7조 ○ 같은 법 제8조 ○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같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 같은 법 제13조 ○ 같은 법 제27조, 제29조 ○ 같은 법 제41조 ○ 같은 법 제42조, 제43조 ○ 같은 법 제44조 ○ 같은 법 제45조 ○ 같은 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같은 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 ○ 같은 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보건소장
18.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 및 등록변경 <u>나. 조사.확인등</u> <u>다. 시정명령</u> <u>라. 과태료</u>	○ 국민건강보험제정건강화특법 제14조제1항,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조 ○ 동법 제17조제2항 내지 제3항 ○ 동법 제18조 ○ 동법 제21조	보건소장	8.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등록 및 등록변경 <삭 제> <u>나. 시정명령</u> <u>다. 과태료</u>	○ 의료법 제38조(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조 ○ 같은 법 제63조 ○ 같은 법 제87조	보건소장
19. 노인전문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다음의 사무 <u>가. 개설허가</u>	○ 노인복지법 제35조 제2항 내지 제4항,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보건소장	<삭 제>		
<u>나. 변경허가 및 폐지휴지의 신고</u>	○ 동법 제40조제2항				
20. 의료보수에 관한 다음의 사무	○ 「의료법」 제37조	보건소장	<삭 제>		

현행			개정안		
<별표> 위임사무			<별표> 위임사무		
<u>가. 의료보수 신고에 관한 사무</u> (다른법률에 의하여 징수하는 의료보수는 제외) 21. 의료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의료법」<u>제41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제34조, 제35조</u>	보건소장	9. 의료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설립허가에 관한 사무	○「의료법」<u>제4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9조</u>	보건소장
나. 정관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 동법 <u>제41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7조</u>		나. 정관변경허가에 관한 사무	○ <u>같은 법 제4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u>	
다.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무	○ 동법 <u>제41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1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u>		다.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관한 사무	○ <u>같은 법 제4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u>	
라. 설립등기의 보고에 관한 사무	○ <u>동법시행규칙 제36조</u>		라. 설립등기의 보고에 관한 사무	○ <u>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u>	
마. 임원선임의 보고에 관한 사무	○ <u>동법시행규칙 제38조</u>		마. 임원선임의 보고에 관한 사무	○ <u>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u>	
바. 재산의 증가보고에 관한 사무	○ <u>동법시행규칙 제39조</u>		바. 재산의 증가보고에 관한 사무	○ <u>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u>	
사. 법인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무	○ <u>동법시행규칙 제42조</u>		사. 법인사무의 검사·감독에 관한 사무	○ <u>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u>	
아.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 <u>동법시행규칙 제43조</u>		아. 해산신고에 관한 사무	○ <u>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u>	
자.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무	○ <u>동법시행규칙 제44조</u>		자. 잔여재산 처분의 허가에 관한 사무	○ <u>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u>	
차. 청산종결의 신고에 관한 사무	○ <u>동법시행규칙 제45조</u>		<삭 제>		
카. 의료법인 설립허가취소에 관한 사무	○ 동법 <u>제45조</u>		<u>차. 의료법인 설립허가취소에 관한 사무</u>	○ <u>같은 법 제51조</u>	
<신 설>			<u>카. 부대사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u>	○ <u>같은 법 제49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제61조</u>	
<신 설>			10. 응급환자 이송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u>가.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u>	○ <u>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u>	

현행			개정안		
<별표> 위임사무			<별표> 위임사무		
			<u>나. 변경허가</u> <u>다. 변경신고</u> <u>라. 휴·폐업, 재개업 신고</u> <u>마. 지위승계 신고</u> <u>바. 과태료 부과 및 징수</u>	<u>○같은 법 제51조제3항</u> <u>○같은 법 제51조제4항</u> <u>○같은 법 제53조</u> <u>○같은 법 제54조</u> <u>○같은 법 제62조제2항</u>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 2016 -510 호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우리 구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에 대하여 같은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강제처리(폐차)를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7월 27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1. 공고기간 : 2016년 7월 27일 ~ 2016년 8월 26일(30일간)

2. 보관장소 : (주)중앙RDC (☎:02-992-4884, FAX:02-992-4806)

- 본 사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화합로 1013

- 서울영업소 : 서울시 도봉구 덕릉로63길 109

3. 강제처리(폐차) 예정일 : **2016년 8월 27일 이후**

4. 강제처리 대상차량 : 총복33거1252 외 19대(이륜차량포함), 불임참조

5.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자동차(이륜차) 소유자(점유자)는 위 기간 내에 자진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처리 할 때에는 **범칙금20~30만원**이 부과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을 때에는 강제처리(폐차) 후 불이행에 대해 **10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일체 지지 않습니다.

라. 이해관계인(압류권자 등)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시에는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 **저당권자는 공고(시작)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권리행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 공시송달 공고는 본 공고로 같음하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중구청 교통행정과(☎02)3396-62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제처리(폐차)되면 차량에 적재된 물건도 함께 처분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처리(폐차)대상자동차(이륜차)내역(2016.7.27.)

연 번	관리 번호	차 량 번 호 (차명/차대)	소 유 자		방 치 장 소	이해관계인 및 내역 (압류 및 저당)
			성 명 (차명)	사용본거지		
1	2015- 사륜-18	충북33거1252 (카렌스LPG)	조**	충북 제천시 봉양읍 용두대로**길	중구 동호로10길 30 (약수하이츠주자장내)	□ 제일상호저축은행-4,500,000 저당번호 4314-2003-000459 □ 제천경찰서-속도위반(충북33마1467), 과태료 □ 제천시청-책임보험, 자동차검사과태료 □ 마산시청-주정차위반 □ 서울 지방법원-대여금 □ 청주시방법원제천시원-대여금, 신용카드이용대금(1,458,006원) □ 청주흥덕구청-주정차위반 □ 서울성북구청 교통과-주정차위반 □ 서울중구청-주정차위반
2	2015- 사륜-20	70고4809 (그랜드카니발)	원**엔터테 인먼트-주	서울 강남구 선릉로 1**길	중구 동호로10길 30 (약수하이츠주차장내)	□ 강남구청-주정차, 지방세, 의무보험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 서대문구청-주정차위반 □ 양천구청-주정차위반 □ 강서구청-주정차위반 □ 마포구청-주정차위반 □ 동작구청-주정차위반 □ 관악구청-주정차위반 □ 종로구청 교통과-주정차위반 □ 강동구청-주정차위반 □ 서울중구청-주정차위반 □ 영등포구청-주정차위반 □ 부산광역시-체납(24허2228)과태료 □ 송파구청-주정차위반 □ 국민건강보험(강남북부)-건강, 연금, 고용, 산재보험체납 □ 용산구청-주정차위반 □ 남양주시청-주정차위반
3	2016- 사륜-6	23누8922 (체어맨)	김**	전남 장성군 북이면 신평리 ***	중구 청구로 64 (e편한세상아파트내)	□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13,800,000 저당번호 4609-2008-002194 □ 장성군청-환경개선부담금, 책임보험, 과태료, 자동차세, 정기검사 □ 장성경찰서-과태료, 속도위반 □ 광주북구교통과-주정차위반 □ 광주광역시동구-주정차위반 □ 광주광역시남구-주정차위반 (전남57다3310) □ 삼척시청-주정차위반 □ 부산사상구-주정차위반 □ 국민건강보험(장성담양지사)-건강, 연금, 고용, 산재보험체납
4	2016- 사륜-9	경기48녀5568 (리오)	SER OD MUNKH **	경기 화성시 팔탄면 ***	중구 마른내로 161-1 (파리바게트)	□ 화성시청-의무보험미가입, 지방세, 주정차위반, 자동차검사 □ 화성서부경찰서-과태료체납 □ 팔달구청-주정차위반 □ 서울중부경찰서-영치

연 번	관리 번호	차 량 번 호 (차명/차대)	소 유 자		방 치 장 소	이해관계인 및 내역 (압류 및 저장)
			성 명 (차 명)	소유자 사용본거지		
5	2016- 사륜-12	10루9868 (투스카니)	JAYNASHUH* *	전남 무안군 몽탄면 봉명***	중구 수표로27 중부경찰서	☐ 거제시청-지방세, 책임보험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 전남목포시청-주정차위반 ☐ 거제경찰서-과태료체납 ☐ 전남무안군청-지방세, 자동차검사 ☐ 화성시청-의무보험미가입, 지방세 검사지원과태료 ☐ 화성서부경찰서-과태료체납
6	2016- 사륜-17	43터9802 (세피아)	SABIROV SARDORB**	경기 화성시 팔탄면 온천로 **	중구 소파로 148-10	☐ 화성시청-의무보험미가입, 지방세 검사지원과태료 ☐ 화성서부경찰서-과태료체납
7	2016- 이륜-2	서울강서자1200 (CITI100)	송**	서울시강서구 화곡로 **가길	중구 난계로173 (황학동787)	“해당내역없음”
8	2016- 이륜-4	서울서대문바4749 (KMYVF125H1COO8715)	남**	서울시 중구 다산로 **가길	중구 다산로36길5 (말일성도교회)	“해당내역없음”
9	2016- 이륜-14	전북남원가1972 (*LWBTCG1M741000193*)	조**	전북 남원시 노송로 **	중구 다산로42가길27 공사장벽	“해당내역없음”
9	2016- 이륜-26	서울강북차6337 (SC125E*2103694*)	송**	서울시 강북구 삼양로1**길	중구 다산로42가길27 공사장벽	“해당내역없음”
11	2016- 미상-64	KMYOGW90D1CO67104	super lead	미상	중구 을지로 203-1	“해당내역없음”
12	2016- 미상-65	CA110E1132240	citi Ace110	미상	중구 을지로177	“해당내역없음”
13	2016- 미상-67	KMYVF125HXCOO2917	미상	미상	중구 을지로4가역 10번출구	“해당내역없음”
14	2016- 미상-81	LAAATEJU379991951	미상	미상	중구 약수역10번출구 공중전화열	“해당내역없음”
15	2016- 미상-82	VT125E1018087	MAGMA	미상	중구 주교동40-2 태광비니루가계앞	“해당내역없음”
16	2016- 미상-85	*LBFTCJDKX7F300540*	미상	미상	중구 을지로210 (을지로5가 270-1)	“해당내역없음”
17	2016- 미상-86	*LZSTCGPB971000330*	미상	미상	중구 퇴계로197 (충무빌딩별관 신탄마을)	“해당내역없음”
18	2016- 미상-87	KM4CA14B711100296	RACING	미상	중구 퇴계로30길 24	“해당내역없음”
19	2016- 미상-88	VJ125E1007564	미상	미상	중구 퇴계로30길 24	“해당내역없음”
20	2016- 미상-89	KMYSE7ADS8C506564	미상	미상	중구 퇴계로30길 24	“해당내역없음”